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559(2016. 5. 31.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(고시 제2016-69호, 2016. 5. 11.)을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 하였기에 안내 해 드립니다.

□ 주요 개정 사항

○ 신설 1개 항목

[395] Elosulfase alfa 5mg 주사제(품명 : 비미짐주)

○ 변경 6개 항목

[일반원칙] 골다공증치료제

[212] Dronedarone 경구제(품명 : 멀택정)

[612] Aztreonam 주사제(품명 : 아작탐주)

[629] Ledipasvir + Sofosbuvir 경구제(품명 : 하보니정)

[629] Levofloxacin 경구제 (품명 : 레보펙신정 등)

[629] Moxifloxacin 경구제(품명 : 아벨록스정 등)

※ 시행일 : 2016년 6월 1일

붙임 : 개정고시문 및 변경대비표.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메뉴상단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사원 김재현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 행 : 보험 제 2016-279 ( 2016.06.01 )

우편번호 04165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5 전 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kjh@kha.or.kr